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1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민홍철·문대림·조 국

이기헌 · 허성무 · 백혜련

한정애 · 정준호 · 이건태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보조비율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지역소멸 지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이하 "지역소멸 지수"라 한다)를 개발·공표할 수 있 다.
 - ② 정부는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소멸 지수의 설정, 내용 및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소멸 지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
원) ① ~ ③ (생 략)	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
	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22조의2에 따
	른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보조비율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22조의2(지역소멸 지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소멸 수
	준을 나타내는 지수(이하 "지
	역소멸 지수"라 한다)를 개발
	<u>· 공표할 수 있다.</u>
	② 정부는 지역소멸 지수를 고
	려하여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초
	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소멸 지
	수의 설정, 내용 및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